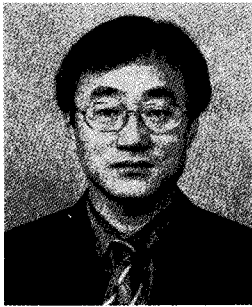


근로자의 청력보호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적용사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차장
이길수

1. 서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소음성 난청이 직업병유소견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력검사로 발견되는 난청에 대한 조기발견과 소음 폭로의 중단, 소음을 제어하는 흡음시설 등의 제반 설치와 장치의 개발 또는 당해기계나 설비를 대체, 개선 또는 밀폐하거나 소음발생원인을 격리하거나 격벽을 설치하는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력검사와 소음측정 및 제어 등과 함께 청력보전을 위한 사업장에서 청력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와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적절한 보호구의 공급 등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소음폭로 근로자들의 청력보호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을 제어하는 기술개발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소음을 낮추기 위한 설비투자 규모도 매우 커서 많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음작업장에서는 소음에 폭로되는 근로자들을 하여금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도록하여 소음폭로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리베팅기,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 등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1)귀의 위치에서 90db내외의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2)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를 초과하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경우는 소음성 난청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나. 측정방법

1)24시간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방음시설이 잘된 청력검사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 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 + 2B + 2C + D) ÷ 6)으로 판정하고 청력검사는 최소 3회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2)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는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증상은 점차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등급의 인정은 당해 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떠났을 때에 행한다.

3. 보상기준

가. 청력의 측정

1) 청력장애의 등급은 순음(純音)에 의한 청력레벨(보통 Audiometer에 의하여 청력을 측정하며 데시벨로 표시한다) 및 어음(語音)에 의한 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청력의 측정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의 청력검사는 90폰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된 후 실시하며 청력검사전 90일 이전에 90폰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한다.

3) 청력검사일 이전 8일 내지 90일 사이에 90폰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당해 확인시의 청력검사를 2회째로 하여 날을 바꾸어 다시 3회째를 측정하여 2회째와 3회째 측정치의 평균치를 기초로 한다.

4)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음향성 청기장애로 하여 소음성 난청과 구분하여야 하고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도 치유시기 이후에 결정된다.

나. 등급의 인정

1) 청력의 장애등급 인정기준은 두귀의 경우는 6단계로 구분하여 최초 장애등급 제4급에서 최저 장애

등급 제11급까지 이고 한귀의 경우는 4단계로 구분하여 최고 장애등급 제9급에서 최저 장애등급 제14급까지 인정된다.

2) 평균순음청력레벨이 80db 이상의 청력손실은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되어 한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9급, 두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되고, 평균순음청력레벨이 79 - 70db의 청력손실은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로 한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10급, 두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6급에 해당되며, 평균순음청력레벨이 69 - 60db의 청력손실은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로 한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11급, 두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7급으로 인정된다.

3) 한귀의 평균순음청력레벨이 8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귀의 평균순음청력레벨이 41 - 59db이며 어음명료도검사상 최량명료도가 50%이상인 경우는 장애등급 제7급으로 인정하고 한귀의 평균순음청력레벨이 79 - 70db이고 동시에 다른 귀의 평균순음청력레벨이 41 - 59db이며 어음명료도검사상 최량명료도가 50%이상인 경우는 장애등급 제9급으로 인정된다.

4)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가 41 - 50db로서 어음명료도검사상 최량명료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한귀는 장애등급 제11급, 두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7급으로 인정된다.

5) 최량명료도가 50% 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귀의 경우는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장애등급 제14급, 두귀의 경우는 장애등급 제12급으로 인정된다.

6)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에만 한하여 장애등급 제12급으로 인정된다.

4. 산재보상 사례

연도별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발견된 근로자는 1990년 3,534명, 1991년 3990명, 1992년 3,345명으로 나타나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1994년도 130명, 1995년도 155명, 1996년도 310명, 1997년 6월 현재 12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소음성 난청에 폭로되는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이환되고 있는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1994. 12. 23. 주식회사대우중공업 소속 소음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옥포대우병원에서 근로자정기건강진단 결과 황청도 등 183명이 직업성 난청 유소견자로 진단되어 부산백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아 133명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의한 장애등급을 인정하였으나 청력 손실이 경미한 43명에 대하여는 장애등급을 인정치 아니하였다가 불인정된 43명 중 청력손실 측정치가 41-59db인 경우이고 어음명료도검사나 이명에 대한 타각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기건강진단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견된 13명에 대하여 추가로 장애등급을 인정하였다.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으므로 어느 나라에서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상기준은 일본의 기준을 참고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직업병으로 1991년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291,625명의 수검자 중에 3,982명으로 유소견율은 1.37%이었으며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의 5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진단 결과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발견된 난청 질환자들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력장애 보상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여 1997.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은 학자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사회경제적 여건과 의료기술의 제반 여건에 합당한 객관적인 청력장

해의 평가 및 판정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